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 종 환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되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
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
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재단법인 서
울시립교향악단에도 이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- 이에 개정된 법률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, 재단법인 서
울시립교향악단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조례를 개정하

고자 합니다.(안 제14조제2항)

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